

의안번호	2211636
의 퇴 인	이인선 의원
회 답 일	2025. 9. 10.
추 계 번호	25F388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의2 (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- 기업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및 운영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 신설 - 공제대상: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등을 위한 투자 ②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한 비용 ※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범위, 투자금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 규정 - 공제율(%): 중소기업 15, 중견기업 10, 대기업 7 - 적용기한: 2029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의2 (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기업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4조의2 신설)
- 현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비투자는 일반적인 설비투자로 규정되어 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1~10%를 세액공제
 - －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(%): (일반 시설투자) 중소기업 10, 중견기업 5~7.5, 대기업 1
 - ※ 단,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(신성장·원천기술) 관련 설비투자는 3~12%의 공제율 적용

- 개정안은 기업이 지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와 운영비에 대하여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 신설
 - 공제대상: 기업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* 및 운영비용***
 - ※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·전환·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)
 - *** 전력비, 유지보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
 - 공제율(%): 중소기업 15, 중견기업 10, 대기업 7
 - 적용기한: 2029.12.31.

[표 1]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(당기분)와 개정안 비교
(단위: %)

		현행 (통합투자세액공제)	개정안 (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
공제대상		-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설비투자	-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및 운영비용 * 공제대상 투자범위는 시행령 규정
공 제 율	중소기업	10	15
	중견기업 ²⁾	5~7.5	10
	대기업	1	7
적용기한		없음 * 국가전략기술 우대공제: 2029.12.31.	2029.12.31.

주: 1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등의 범위를 바탕으로 향후 해당 투자 및 운영비의 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나,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범위 및 투자금액 산정방법 등 시행령 규정사항이 미비하고,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개정안은 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범위와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의 투자금액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공제대상의 범위 및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움
- 또한,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와 투자로 인한 세액공제 규모, 운영비의 현황 등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

투자액과 운영비,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료¹⁾에 따르면,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NHN Cloud가 운영하고 있는 ‘국가 AI 데이터센터’(광주), KT Cloud가 운영하고 있는 ‘경북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’(경북 예천) 등이 있음
- 이외에도 울산(SK텔레콤), 구미(삼성SDS) 등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, 현 시점에서 향후 연도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계획 등 공제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

1)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, “AI 데이터센터 동향과 시사점,” 2025.7.